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최고가입참가자 준수규칙

제정	: 2008.07.23
개정(1)	: 2010.03.24
개정(2)	: 2011.01.25
개정(3)	: 2015.12.30
개정(4)	: 2018.02.20

제1조(목적 및 적용범위) 이 준수규칙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공사”라 합니다)가 관리·운영하는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인 온비드(OnBid)에서 이용기관회원이 실시하는 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을 위한 전자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할 규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정의) 이 준수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용기관회원”이란 온비드에 자신의 정보를 제공하여 회원가입을 한 자로서 온비드의 정보 서비스를 제공받고 이용하며, 온비드를 대여(“온비드 대여”)란 공사가 수수료를 받고 이용기관회원이 보유 또는 관리 중인 재산의 관리·처분을 위하여 시스템을 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받거나 이용하여 재산을 매각·구매할 수 있는 공공기관회원 또는 이용법인회원을 말합니다.

가. 공공기관회원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기관 등 공사가 온비드 이용을 승인한 공공기관

나. 이용법인회원 : 금융회사, 유가증권·코스닥시장 상장법인 등 공사가 온비드 이용을 승인한 법인

2. “공인인증기관”이란 공인인증역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자서명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자를 말합니다.
3. “은행공동망”이란 개별은행간의 전산망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온라인 입출금 및 자금이체 등의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4. “난수발생기”란 특정한 배열순서나 규칙적 의미를 갖지 않는 임의의 수를 만들어내는 알고리즘을 말합니다.
5. “전자보증서”란 온비드를 통해 전자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입찰보증금을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기 위하여 공사와 협약 체결한 보증보험증권 발급기관(이하 “발급기관”이라 합니다)에 보험청약을 하고, 발급기관이 입찰자를 보험계약자로 이용기관회원을 피보험자로 하여 전자적으로 발급한 후에 온비드에 전송된 보증보험증권을 말합니다.

제3조(입찰참가방법) ①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온비드 회원으로 가입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이하 “공인인증서”라 합니다)를 온비드에 등록한 후 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다만, 등록하는 공인

인증서는 전자입찰에 사용 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

②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로 접속하여 입찰에 참가한 경우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입찰에 참가한 것으로 봅니다.

③ 기명날인은 입찰서 제출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서에 전자서명한 것으로 합니다. 이 경우 전자서명은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함으로써 자동서명된 것으로 합니다.

제4조(입찰자 자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1. 타인의 입찰참가 방해, 낙찰자 결정 또는 매수인의 매수대금(사용료) 납부 방해 등 입찰진행을 방해한 사실이 있는 자
2. 입찰에 참가하여 부당하게 가격을 떨어뜨릴 목적으로 담합한 사실이 있는 자
3. 허위 명의로 매수 신청한 사실이 있는 자
4. 입찰을 방해할 목적 등으로 온비드를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게 하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자
5. 입찰을 실시하는 담당 공무원 및 직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있는 자
6. 그 밖에 이용기관회원이 별도로 정하는 자

제5조(관련 규정 및 입찰절차 준수)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입찰공고조건, 계약일반조건, 온비드 이용약관, 그 밖에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이를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제6조(입찰서 기재방법) ① 입찰은 입찰공고 물건의 입찰번호 단위로 입찰하여야 합니다. 다만, 별도의 고지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② 입찰자는 입찰서에 매수하려는 물건에 대한 입찰금액, 유찰 등 환불사유 발생 시 입찰보증금을 환불받을 환불계좌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의 표시는 아라비아숫자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③ 입찰보증금을 전자보증서로 납부할 경우 입찰금액은 입찰자가 전자보증서 발급신청시의 입찰예정금액 범위 내에서 직접 기재하여야 합니다.

④ 이용기관회원이 허용하는 2명 이상의 공동명의 입찰에 참가하려는 경우에는 입찰기간 중에 불임1의 공동입찰참가신청서를 이용기관회원에게 제출하며, 대표 입찰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용기관회원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⑤ 이용기관회원이 허용하는 대리인을 통해 입찰에 참가하려는 경우에는 입찰기간 중에 불임2의 대리입찰신청서를 이용기관회원에게 제출하며, 대리인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용기관회원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⑥ 입찰서 기재의 오류로 인하여 회원이 입은 불이익 등은 회원 본인이 책임을

부담합니다.

⑦ 제4항에서 정한 공동입찰참가신청서 또는 제5항에서 정한 대리입찰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낙찰받은 경우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대표입찰자 또는 대리입찰자가 입찰서 제출시 지정한 입찰보증금 환불계좌로 이자없이 환불하고, 환불시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하는 경우 납부한 금액에서 이를 공제합니다. 다만 이용기관회원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⑧ 제4항에서 정한 공동입찰참가신청서를 공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서명 방식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이용기관회원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온비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7조(입찰서 제출) ① 입찰서 제출은 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온비드로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되, 입찰서 제출시간은 공사가 지정한 공인인증기관이 전자서명법 제20조에 따라 확인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공인인증기관의 시점확인 시스템 또는 시스템에 연결된 네트워크 등의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온비드 서버에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② 입찰자는 입찰서를 입찰 마감시간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온비드의 전산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입찰마감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③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후 입찰응답 메시지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의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④ 입찰자가 제출한 입찰서는 이를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으며, 동일한 입찰자가 하나의 물건에 대하여 2회 이상 입찰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용기관회원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의2(차순위 매수신고) ① 입찰자는 이용기관회원이 입찰공고시 명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제10조에 따라 결정된 낙찰자가 대금납부기한까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자기의 매수신고에 대하여 매각을 허가하여 달라는 취지의 신고(이하 “차순위 매수신고”라 한다)를 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차순위 매수신고에 대하여 이용기관회원이 별도로 정하는 바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제8조(입찰보증금) ① 입찰보증금은 이용기관회원이 정하는 입찰금액의 일정률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입찰참가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수수료 포함)을 입찰 마감시간 전까지 온비드에서 지정하는 보증금 납부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입금된 금액에서 입찰참가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합니다. 다만, 이용기관회원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② 입찰보증금 및 입찰참가수수료(입찰참가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에 한

함)를 입찰 마감시간 전까지 보증금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은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입찰보증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입찰 마감시간 전까지 입찰보증금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③ 입찰보증금 및 입찰참가수수료 납부 시 은행공동망 등의 장애로 정상적인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보증금 납부여부는 입찰자가 온비드 화면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입찰자가 입은 불이익 등은 입찰자 본인이 책임을 부담합니다.

④ 입찰보증금을 전자보증서로 납부하려는 경우 입찰자는 온비드가 발급하는 관리번호를 이용하여 직접 발급기관에 보험청약을 하여야 합니다.

⑤ 입찰자는 발급기관으로부터 전자보증서 발급 통보를 받아 온비드에 전자보증서가 접수되었는지와 발급된 전자보증서 내용이 정확한 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⑥ 입찰보증금을 전자보증서로 납부할 경우 전자보증서 발급신청시의 입찰보증금은 전자보증서의 보험가입금액 및 입찰서 제출시 입찰자가 납부하는 입찰보증금이 됩니다. 다만, 입찰자가 낙찰받은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이용기관회원이 발급기관에 청구할 보험금은 전자보증서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하여 이용기관회원이 정하는 금액이 됩니다.

⑦ 입찰보증금을 전자보증서로 납부할 경우 입찰자가 선택한 전자보증서는 입찰서와 동시에 제출된 것으로 봅니다.

제9조(개찰) 개찰은 입찰 공고상에 명시된 입찰장소와 지정된 일시에 이용기관회원이 직접 집행합니다. 다만, 온비드의 전산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개찰일시를 정할 수 있습니다.

제10조(낙찰자 및 차순위 매수신고인 결정) ① 낙찰자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른 유효한 입찰참가자 중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② 제1항의 최고가격 입찰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온비드에 설치된 난수발생기에 의한 무작위 추첨 방법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만, 온비드의 전산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용기관회원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③ 제7조의2에 따라 차순위 매수신고한 입찰자 중 입찰가격이 제1항의 최고입찰가격에서 입찰보증금을 뺀 금액 이상인 입찰자를 차순위 매수신고인으로 결정합니다. 다만, 이용기관회원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 제3항의 차순위 매수신고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차순위 매수신고가격이 높은 입찰자를 차순위 매수신고인으로 결정합니다. 다만, 최고가 차순위 매수신고가격이 동일할 경우에는 온비드에 설치된 난수발생기에 의한 무작위 추첨 방법으로 차순위 매수신고인을 결정합니다.

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결정된 차순위 매수신고인은 낙찰자가 매각대금 완납시까지 입찰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입찰자는 낙찰여부를 온비드의 입찰결과 화면 등을 통하여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제11조(입찰보증금의 처리 등) ① 낙찰자 결정 후 입찰자의 입찰참가수수료 및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이용기관회원의 집금계좌로 이체되며, 유찰자(입찰무효 또는 입찰 취소된 경우 포함) 및 환불처리되는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입찰서 제출시 기재한 환불계좌로 이자 없이 환불되고, 환불시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합니다. 다만, 전자보증서를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한 경우 낙찰자 관련사항은 이용기관회원 입찰공고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보험료 환급 등과 관련된 사항은 발급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자 본인이 처리하기로 합니다.

② 제12조제1항에 따라 입찰이 연기되었을 경우 연기 이전에 정상적으로 납부된 입찰보증금은 개찰일시까지 보증금 납부계좌에 보관합니다.

③ 제10조제5항의 차순위 매수신고인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매각대금을 완납할 때까지 보증금 납부계좌에 보관하며, 매각대금 완납시에는 입찰서 제출시 기재한 환불계좌로 이자 없이 환불됩니다. 만일 환불시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합니다.

④ 제10조에 따른 낙찰자가 대금납부기한까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차순위 매수신고인에게 매각하기로 결정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이용기관회원이 등록 및 신청한 이체계좌로 이자 없이 이체됩니다.

제12조(온비드의 장애발생 등에 대한 처리) ① 온비드의 장애는 시스템 다운, 시스템에 연결된 네트워크의 장애, 업무처리의 기반이 되는 공인인증서 서비스 및 외부연계서비스의 장애 등으로 온비드 접속 또는 입찰서의 송·수신이 불가능하거나 은행의 입찰보증금 납부계좌 발번 및 은행대사 작업 등에 장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② 온비드의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진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연기 또는 취소의 공고는 시스템 복구 후 온비드 홈페이지(www.onbid.co.kr) 게재로 할 수 있습니다.

③ 온비드의 장애가 아닌 입찰자의 네트워크 또는 네트워크 서비스업체의 장애, 시스템 장애 등의 사유로 입찰서 등이 정상적으로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④ 제2항에 따라 입찰이 연기된 경우 연기 이전에 정상적으로 입찰서 제출 및 입찰보증금이 납부된 입찰은 유효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이용기관회원이 별도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⑤ 공사 및 이용기관회원은 온비드의 자체적인 장애 또는 시스템에 연결된 네

트위크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온비드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의 입찰연기, 정정·취소 및 입찰무효처리 등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3조(계약체결 등) 낙찰자는 이용기관회원이 정하는 소정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납부기한, 제세공과금부담 및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의 처리 등 계약체결과 관련한 제반사항 및 사후처리는 이용기관회원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14조(입찰서 제출시기 등에 대한 특약)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적용과 관련해서는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이 준수규칙을 우선 적용합니다.

제15조(준용법규) 이 준수규칙이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온비드 이용약관, 입찰공고문, 전자거래기본법령 및 전자서명법령 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붙임 : 1. 공동입찰참가신청서
2. 대리입찰신청서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추첨입찰참가자 준수규칙

제정 : 2014.04.14
개정(1) : 2015.12.30
개정(2) : 2018.02.20

제1조(목적 및 적용범위) 이 준수규칙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공사"라 합니다)가 관리·운영하는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인 온비드(OnBid)에서 이용기관회원이 실시하는 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을 위한 추첨방식 전자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추첨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할 규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1조의2(정의) 이 준수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용기관회원"이란 온비드에 자신의 정보를 제공하여 회원가입을 한 자로서 온비드의 정보 서비스를 제공받고 이용하며, 온비드를 대여("온비드 대여")란 공사가 수수료를 받고 이용기관회원이 보유 또는 관리 중인 재산의 관리·처분을 위하여 시스템을 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받거나 이용하여 재산을 매각·구매할 수 있는 공공기관회원 또는 이용법인회원을 말합니다.
가. 공공기관회원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기관 등 공사가 온비드 이용을 승인한 공공기관
나. 이용법인회원 : 금융회사, 유가증권·코스닥시장 상장법인 등 공사가 온비드 이용을 승인한 법인
2. "공인인증기관"이란 공인인증역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자서명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자를 말합니다.
3. "은행공동망"이란 개별은행간의 전산망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온라인 입출금 및 자금이체 등의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4. "난수발생기"란 특정한 배열순서나 규칙적 의미를 갖지 않는 임의의 수를 만들어내는 알고리즘을 말합니다.
5. "전자보증서"란 온비드를 통해 전자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입찰보증금을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기 위하여 공사와 협약 체결한 보증보험증권 발급기관(이하 "발급기관"이라 합니다)에 보험청약을 하고, 발급기관이 입찰자를 보험계약자로 이용기관회원을 피보험자로 하여 전자적으로 발급한 후에 온비드에 전송된 보증보험증권을 말합니다.
6. "추첨입찰"이란 입찰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른 유효한 입찰참가자를 대상으로 온비드에 설치된 난수발생기에 의해 무작위 추첨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는 입찰방식입니다.

제2조(추첨입찰 참가방법) ① 추첨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온비드 회원으로 가입하고 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이하 “공인인증서”라 합니다)를 온비드에 등록한 후 입찰화면에서 추첨입찰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다만, 등록하는 공인인증서는 전자입찰에 사용 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

②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로 접속하여 추첨에 참가한 경우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추첨에 참가한 것으로 봅니다.

③ 기명날인은 추첨신청서 제출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추첨신청서에 전자서명한 것으로 합니다. 이 경우 전자서명은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추첨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자동서명된 것으로 합니다.

제3조(추첨입찰 참가자 자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첨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1. 타인의 추첨참가 방해, 당첨자 결정 또는 매수인의 매수대금(사용료) 납부 방해 등 추첨진행을 방해한 사실이 있는 자
2. 추첨에 참가하여 부당하게 가격을 떨어뜨릴 목적으로 담합한 사실이 있는 자
3. 허위 명의로 추첨 참가한 사실이 있는 자
4. 추첨을 방해할 목적 등으로 온비드를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게 하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자
5. 추첨을 실시하는 담당 공무원 및 직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있는 자
6. 그 밖에 이용기관회원이 별도로 정하는 자

제4조(관련 규정 및 추첨입찰 참가절차 준수) 추첨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입찰 공고조건, 계약일반조건, 온비드이용약관, 그 밖에 추첨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추첨입찰참가 전에 이를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추첨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제5조(추첨입찰 신청서 기재방법) ① 추첨참가는 추첨공고상의 물건 단위로 하여야 합니다. 다만, 별도의 고지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② 추첨입찰참가자는 추첨입찰 신청서에 매수하려는 물건에 대한 입찰금액, 유찰 등 환불사유 발생 시 입찰보증금을 환불받을 환불계좌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의 표시는 아라비아숫자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③ 추첨입찰보증금을 전자보증서로 납부할 경우 입찰금액은 입찰자가 전자보증서 발급신청시의 입찰예정금액 범위 내에서 직접 기재하여야 합니다.

④ 이용기관회원이 허용하는 2명 이상의 공동명의 추첨입찰에 참가하려는 경우에는 입찰기간 중에 붙임1의 공동입찰참가신청서를 이용기관회원에게 제출하며, 대표입찰자 명의로 추첨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용기관회원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⑤ 이용기관회원이 허용하는 대리인을 통해 추첨입찰에 참가하려는 경우에는

입찰기간 중에 붙임2의 대리입찰신청서를 이용기관회원에게 제출하며, 대리인 명의로 추첨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용기관회원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⑥ 추첨입찰 신청서 기재의 오류로 인하여 회원이 입은 불이익 등은 회원 본인이 책임을 부담합니다.

⑦ 제4항에서 정한 공동입찰참가신청서 또는 제5항에서 정한 대리입찰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낙찰받은 경우 낙찰을 무효로 하고, 추첨입찰 보증금은 대표입찰자 또는 대리입찰자가 추첨입찰 신청서 제출시 지정한 추첨입찰보증금 환불계좌로 이자없이 환불하고, 환불시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하는 경우 납부한 금액에서 이를 공제합니다. 다만 이용기관회원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⑧ 제4항에서 정한 공동입찰참가신청서를 공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서명 방식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이용기관회원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온비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6조(추첨입찰 신청서 제출) ① 추첨신청서 제출은 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온비드로 송신하는 방법에 의하되, 추첨신청서 제출시각은 공사가 지정한 공인인증기관이 전자서명법 제20조에 따라 확인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공인인증기관의 시점확인 시스템 또는 시스템에 연결된 네트워크 등의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온비드 서버에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② 추첨참가자는 추첨신청서를 추첨참가 마감시간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온비드의 전산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추첨참가 마감시각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③ 추첨참가자는 추첨신청서 제출 후 본인의 추첨신청서가 이상없이 제출되었음을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④ 추첨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추첨입찰신청서는 이를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으며, 동일한 추첨입찰 참가자가 하나의 물건에 대하여 2회 이상 추첨입찰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제7조(추첨입찰보증금) ① 추첨입찰보증금은 이용기관회원이 정하는 입찰금액의 일정률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입찰참가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수수료 포함)을 추첨입찰 참가 마감시간 전까지 온비드에서 지정하는 보증금납부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입금된 금액에서 입찰참가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추첨입찰보증금으로 합니다. 다만, 이용기관회원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② 추첨입찰보증금 및 입찰참가수수료(입찰참가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에만함)를 추첨입찰 참가 마감시간 전까지 보증금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추첨입찰 참가는 무효로 하며, 추첨입찰보증금은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여

야 합니다. 다만, 추첨입찰보증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추첨입찰 마감시간 전까지 추첨입찰보증금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③ 추첨입찰보증금 및 입찰참가수수료 납부 시 은행공동망 등의 장애로 정상적인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보증금 납부여부는 추첨입찰참가자가 온비드 화면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추첨참가자가 입은 불이익 등은 추첨입찰참가자 본인이 책임을 부담합니다.

④ 추첨입찰보증금을 전자보증서로 납부하려는 경우 추첨입찰참가자는 온비드가 발급하는 관리번호를 이용하여 직접 발급기관에 보험청약을 하여야 합니다.

⑤ 추첨입찰참가자는 발급기관으로부터 전자보증서 발급 통보를 받아 온비드에 전자보증서가 접수되었는지와 발급된 전자보증서 내용이 정확한 지를 확인한 후 추첨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⑥ 추첨입찰보증금을 전자보증서로 납부할 경우 전자보증서 발급신청시의 추첨입찰보증금은 전자보증서의 보험가입금액 및 추첨입찰신청서 제출시 추첨입찰참가자가 납부하는 추첨입찰보증금이 됩니다. 다만, 추첨입찰참가자가 낙찰받은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이용기관회원이 발급기관에 청구할 보험금은 전자보증서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하여 이용기관회원이 정하는 금액이 됩니다.

⑦ 추첨입찰보증금을 전자보증서로 납부할 경우 추첨입찰참가자가 선택한 전자보증서는 추첨입찰신청서와 동시에 제출된 것으로 봅니다.

제8조(추첨) 추첨은 추첨공고상에 명시된 장소와 지정된 일시에 이용기관회원이 직접 실시합니다. 다만, 온비드의 전산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추첨방법과 일시를 정할 수 있습니다.

제9조(당첨자 선정) ① 당첨자 선정은 추첨공고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른 유효한 추첨참가자를 대상으로 온비드에 설치된 난수발생기에 의한 무작위 추첨 방법으로 실시합니다.

② 추첨참가자는 당첨여부를 온비드의 입찰결과 화면 등을 통해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③ 추첨참가자는 제1항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제10조(추첨입찰보증금의 처리) ① 당첨자 선정 후 당첨자의 추첨입찰보증금은 이용기관회원이 등록 및 신청한 이체계좌로 이체되며, 낙첨자(추첨참가 무효 또는 추첨 취소된 경우 포함)및 환불처리되는 당첨자의 추첨입찰보증금은 추첨입찰신청서 제출시 기재한 환불계좌로 이자없이 환불되고, 환불시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하는 경우 추첨입찰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합니다. 다만, 전자보증서를 추첨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한 경우 당첨자 관련사항은 이용기관회원 입찰공고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보험료 환급 등과 관련된 사항은 발급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첨입찰참가자 본인이 처리하기로 합니다.

② 제11조제1항에 따라 추첨입찰이 연기되었을 경우 연기 이전에 정상적으로 납부된 추첨입찰보증금은 개찰일시까지 보증금 납부계좌에 보관합니다.

제11조(온비드의 장애발생 등에 대한 처리) ① 온비드의 장애는 시스템 다운, 시스템에 연결된 네트워크의 장애, 업무처리의 기반이 되는 공인인증서 서비스 및 외부연계서비스의 장애 등으로 온비드 접속 또는 입찰서의 송·수신이 불가능하거나 은행의 입찰보증금 납부계좌 발번 및 은행대사 작업 등에 장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② 온비드의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추첨절차의 진행이 어려운 경우 추첨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추첨연기 또는 취소의 공고는 시스템 복구 후 온비드 홈페이지 게재로 할 수 있습니다.

③ 온비드의 장애가 아닌 추첨참가자의 네트워크 또는 네트워크 서비스업체의 장애, 시스템 장애 등의 사유로 추첨신청서 등이 정상적으로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추첨참가를 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④ 제1항에 따라 추첨이 연기된 경우 추첨연기 이전에 정상적으로 추첨신청서 제출 및 추첨보증금이 납부된 추첨참가의 유효여부는 이용기관회원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⑤ 공사 및 이용기관회원은 온비드의 자체적인 장애 또는 시스템에 연결된 네트워크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온비드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의 추첨연기, 정정·취소 및 추첨무효처리 등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2조(계약체결 등) 당첨자는 이용기관회원에서 정하는 소정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납부기한, 제세공과금부담 및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추첨입찰보증금의 처리 등 계약체결과 관련된 사항 및 사후처리는 이용기관회원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12조의2(추첨입찰신청서 제출시기 등에 대한 특약)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적용과 관련해서는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이 준수규칙을 우선 적용합니다.

제13조(준용법규) 이 준수규칙이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온비드이용약관, 추첨공고문, 전자거래기본법령 및 전자서명법령 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붙임 : 1. 공동입찰참가신청서
2. 대리입찰신청서

전자자산처분시스템 평가입찰참가자 준수규칙

제정 : 2015.12.30
개정(1) : 2018.02.20

제1조(목적 및 적용범위) 이 준수규칙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공사”라 합니다)가 관리·운영하는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인 온비드(OnBid)에서 이용기관회원이 실시하는 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을 위한 평가방식 전자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평가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할 규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정의) 이 준수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용기관회원”이란 온비드에 자신의 정보를 제공하여 회원가입을 한 자로서 온비드의 정보 서비스를 제공받고 이용하며, 온비드를 대여(“온비드 대여”란 공사가 수수료를 받고 이용기관회원이 보유 또는 관리 중인 재산의 관리·처분을 위하여 시스템을 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받거나 이용하여 재산을 매각·구매할 수 있는 공공기관회원 또는 이용법인회원을 말합니다.

가. 공공기관회원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기관 등 공사가 온비드 이용을 승인한 공공기관

나. 이용법인회원 : 금융회사, 유가증권·코스닥시장 상장법인 등 공사가 온비드 이용을 승인한 법인

2. “공인인증기관”이란 공인인증역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자서명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자를 말합니다.
3. “은행공동망”이란 개별은행간의 전산망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온라인 입출금 및 자금이체 등의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4. “난수발생기”란 특정한 배열순서나 규칙적 의미를 갖지 않는 임의의 수를 만들어내는 알고리즘을 말합니다.
5. “전자보증서”란 온비드를 통해 전자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입찰보증금을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기 위하여 공사와 협약 체결한 보증보험증권 발급기관(이하 “발급기관”이라 합니다)에 보험청약을 하고, 발급기관이 입찰자를 보험계약자로 이용기관회원을 피보험자로 하여 전자적으로 발급한 후에 온비드에 전송된 보증보험증권을 말합니다.
6. “평가입찰”이란 입찰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른 유효한 입찰참가자 중 평가점수와 입찰가격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최고득점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입찰방식입니다.

제3조(평가입찰참가방법) ①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온비드 회원으로 가입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이하 “공인인증서”라 합니다)를 온비드에 등록한 후 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다만, 등록하는 공인인증서는 전자입찰에 사용 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

②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로 접속하여 입찰에 참가한 경우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입찰에 참가한 것으로 봅니다.

③ 기명날인은 입찰서 제출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서에 전자서명한 것으로 합니다. 이 경우 전자서명은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함으로써 자동서명된 것으로 합니다.

제4조(평가입찰자 자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1. 타인의 입찰참가 방해, 낙찰자 결정 또는 매수인의 매수대금(사용료) 납부 방해 등 입찰진행을 방해한 사실이 있는 자
2. 입찰에 참가하여 부당하게 가격을 떨어뜨릴 목적으로 담합한 사실이 있는 자
3. 허위 명의로 매수 신청한 사실이 있는 자
4. 입찰을 방해할 목적 등으로 온비드를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게 하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자
5. 입찰을 실시하는 담당 공무원 및 직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있는 자
6. 그 밖에 이용기관회원이 별도로 정하는 자

제5조(관련 규정 및 평가입찰절차 준수)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입찰공고조건, 계약일반조건, 온비드 이용약관, 그 밖에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이를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제6조(평가입찰서 기재방법) ① 입찰은 입찰공고 물건의 입찰번호 단위로 입찰하여야 합니다. 다만, 별도의 고지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② 입찰자는 입찰서에 매수하려는 물건에 대한 입찰금액, 유찰 등 환불사유 발생 시 입찰보증금을 환불받을 환불계좌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의 표시는 아라비아숫자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③ 입찰보증금을 전자보증서로 납부할 경우 입찰금액은 입찰자가 전자보증서 발급신청시의 입찰예정금액 범위 내에서 직접 기재하여야 합니다.

④ 이용기관회원이 허용하는 2명 이상의 공동명의 입찰에 참가하려는 경우에는 입찰기간 중에 불임1의 공동입찰참가신청서를 이용기관회원에게 제출하며, 대표 입찰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용기관회원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⑤ 이용기관회원이 허용하는 대리인을 통해 입찰에 참가하려는 경우에는 입찰기간 중에 불임2의 대리입찰신청서를 이용기관회원에게 제출하며, 대리인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용기관회원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⑥ 입찰서 기재의 오류로 인하여 회원이 입은 불이익 등은 회원 본인이 책임을 부담합니다.

⑦ 제4항에서 정한 공동입찰참가신청서 또는 제5항에서 정한 대리입찰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낙찰받은 경우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대표입찰자 또는 대리입찰자가 입찰서 제출시 지정한 입찰보증금 환불계좌로 이자없이 환불하고, 환불시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하는 경우 납부한 금액에서 이를 공제합니다. 다만 이용기관회원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⑧ 제4항에서 정한 공동입찰참가신청서를 공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서명 방식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이용기관회원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온비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7조(평가입찰서 제출) ① 입찰서 제출은 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온비드로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되, 입찰서 제출시간은 공사가 지정한 공인인증기관이 전자서명법 제20조에 따라 확인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공인인증기관의 시점확인 시스템 또는 시스템에 연결된 네트워크 등의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온비드 서버에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② 입찰자는 입찰서를 입찰 마감시간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온비드의 전산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입찰마감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③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후 입찰응답 메시지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의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④ 입찰자가 제출한 입찰서는 이를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으며, 동일한 입찰자가 하나의 물건에 대하여 2회 이상 입찰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용기관회원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8조(평가입찰보증금) ① 입찰보증금은 이용기관회원이 정하는 입찰금액의 일정률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입찰참가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수수료 포함)을 입찰 마감시간 전까지 온비드에서 지정하는 보증금 납부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입금된 금액에서 입찰참가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합니다. 다만, 이용기관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② 입찰보증금 및 입찰참가수수료(입찰참가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에 한정함)를 입찰 마감시간 전까지 보증금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은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입찰보증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입찰 마감시간 전까지 입찰보증금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③ 입찰보증금 및 입찰참가수수료 납부 시 은행공동망 등의 장애로 정상적인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보증금 납부여부는 입찰자가 온비드 화면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입찰자가 입은 불이익 등은 입찰자 본인이 책임을 부담합니다.

④ 입찰보증금을 전자보증서로 납부하려는 경우 입찰자는 온비드가 발급하는 관리번호를 이용하여 직접 발급기관에 보험청약을 하여야 합니다.

⑤ 입찰자는 발급기관으로부터 전자보증서 발급 통보를 받아 온비드에 전자보증서가 접수되었는지와 발급된 전자보증서 내용이 정확한 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⑥ 입찰보증금을 전자보증서로 납부할 경우 전자보증서 발급신청시의 입찰보증금은 전자보증서의 보험가입금액 및 입찰서 제출시 입찰자가 납부하는 입찰보증금이 됩니다. 다만, 입찰자가 낙찰받은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이용기관회원이 발급기관에 청구할 보험금은 전자보증서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하여 이용기관회원이 정하는 금액이 됩니다.

⑦ 입찰보증금을 전자보증서로 납부할 경우 입찰자가 선택한 전자보증서는 입찰서와 동시에 제출된 것으로 봅니다.

제9조(개찰) 개찰은 입찰 공고상에 명시된 입찰장소와 지정된 일시에 이용기관이 직접 집행합니다. 다만, 온비드의 전산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개찰일시를 정할 수 있습니다.

제10조(낙찰자 결정) ① 낙찰자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른 유효한 입찰참가자 중 평가점수와 입찰가격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최고득점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② 제1항의 최고득점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제일 높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만일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세부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용기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④ 입찰자는 낙찰여부를 온비드의 입찰결과 화면 등을 통하여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제11조(평가입찰보증금의 처리 등) ① 낙찰자 결정 후 입찰자의 입찰참가수수료 및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이용기관회원이 등록 및 신청한 이체계좌로 이체되며, 유찰자(입찰무효 또는 입찰 취소된 경우 포함) 및 환불처리되는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입찰서 제출시 기재한 환불계좌로 이자 없이 환불되고, 환불시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합니다. 다만, 전자보증서를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한 경우 낙찰자 관련사항은 이용기관 입찰공고 등에

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보험료 환급 등과 관련된 사항은 발급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자 본인이 처리하기로 합니다.

② 제12조제1항에 따라 입찰이 연기되었을 경우 연기 이전에 정상적으로 납부된 입찰보증금은 개찰일시까지 보증금 납부계좌에 보관합니다.

제12조(온비드의 장애발생 등에 대한 처리) ① 온비드의 장애는 시스템 다운, 시스템에 연결된 네트워크의 장애, 업무처리의 기반이 되는 공인인증서 서비스 및 외부연계서비스의 장애 등으로 온비드 접속 또는 입찰서의 송·수신이 불가능하거나 은행의 입찰보증금 납부계좌 발번 및 은행대사 작업 등에 장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② 온비드의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진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연기 또는 취소의 공고는 시스템 복구 후 온비드 홈페이지(www.onbid.co.kr) 게재로 할 수 있습니다.

③ 온비드의 장애가 아닌 입찰자의 네트워크 또는 네트워크 서비스업체의 장애, 시스템 장애 등의 사유로 입찰서 등이 정상적으로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④ 제2항에 따라 입찰이 연기된 경우 연기 이전에 정상적으로 입찰서 제출 및 입찰보증금이 납부된 입찰은 유효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이용기관이 별도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⑤ 공사 및 이용기관은 온비드의 자체적인 장애 또는 시스템에 연결된 네트워크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온비드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의 입찰연기, 정정·취소 및 입찰무효처리 등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3조(계약체결 등) 낙찰자는 이용기관에서 정하는 소정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납부기한, 제세공과금부담 및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의 처리 등 계약체결과 관련한 제반사항 및 사후처리는 이용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14조(평가입찰서 제출시기 등에 대한 특약)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적용과 관련해서는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이 준수규칙을 우선 적용합니다.

제15조(준용법규) 이 준수규칙이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온비드 이용약관, 입찰공고문, 전자거래기본법령 및 전자서명법령 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붙임 : 1. 공동입찰참가신청서
2. 대리입찰신청서

<붙임1>

공동입찰 참가 신청서

1. 입찰에 참가하려는 재산

- 공고기관 :
- 공고일자/공고번호 :
- 물건관리번호 :
- 물건명 :
- 입찰정보

입찰번호 : 입찰회차 : 입찰차수 :

2. 공동입찰 참가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지분(%)	날인

공동입찰 참가신청인 일동은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에 의해 실시하는 귀 기관의 공매물건 입찰에 위 신청인 중 을(를) 대표 입찰자로 선정하여 입찰에 관한 제반사항을 위임하며 동 대표 입찰자가 입찰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첨부 : 공동입찰 참가 신청인의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 각1부. 끝.

귀중

<붙임2>

대리입찰신청서

1. 입찰에 참가하려는 재산

- 공고기관 :
- 공고일자/공고번호 :
- 물건관리번호 :
- 물건명 :
- 입찰정보

입찰번호 :

입찰회차 :

입찰차수 :

2. 대리입찰자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본인은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에 의해 실시하는 귀 기관의 공매물건 입찰에 위 사람을 대리입찰자로 지정하여 참가하고자 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리입찰 신청인(위임인) 성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첨부 : 대리입찰 신청인(위임인)의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 각1부. 끝.

귀중

전자자산처분시스템 호가입찰참가자 준수규칙

제정 : 2015.12.30
개정(1) : 2018.02.20

제1조(목적 및 적용범위) 이 준수규칙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공사”라 합니다)가 관리·운영하는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인 온비드(OnBid)에서 이용기관회원이 실시하는 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을 위한 전자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호가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할 규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정의) 이 준수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용기관회원”이란 온비드에 자신의 정보를 제공하여 회원가입을 한 자로서 온비드의 정보 서비스를 제공받고 이용하며, 온비드를 대여(“온비드 대여”란 공사가 수수료를 받고 이용기관회원이 보유 또는 관리 중인 재산의 관리·처분을 위하여 시스템을 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받거나 이용하여 재산을 매각·구매할 수 있는 공공기관회원 또는 이용법인회원을 말합니다.

가. 공공기관회원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기관 등 공사가 온비드 이용을 승인한 공공기관

나. 이용법인회원 : 금융회사, 유가증권·코스닥시장 상장법인 등 공사가 온비드 이용을 승인한 법인

2. “공인인증기관”이란 공인인증역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자서명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자를 말합니다.

3. “은행공동망”이란 개별은행간의 전산망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온라인 입출금 및 자금이체 등의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4. “난수발생기”란 특정한 배열순서나 규칙적 의미를 갖지 않는 임의의 수를 만들어내는 알고리즘을 말합니다.

5. “전자보증서”란 온비드를 통해 전자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입찰보증금을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기 위하여 공사와 협약 체결한 보증보험증권 발급기관(이하 “발급기관”이라 합니다)에 보험청약을 하고, 발급기관이 입찰자를 보험계약자로 이용기관회원을 피보험자로 하여 전자적으로 발급한 후에 온비드에 전송된 보증보험증권을 말합니다.

6. “호가입찰”이란 입찰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른 유효한 입찰참가자를 대상으로 호가입찰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입찰금액을 서로 올려 제출하는 방법으로 최종 최고입찰금액을 제출한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입찰방식입니다.

제3조(호가입찰참가방법) ①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온비드 회원으로 가입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이하 “공인인증서”라 합니다)를 온비드에 등

록한 후 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다만, 등록하는 공인인증서는 전자입찰에 사용 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

②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로 접속하여 입찰에 참가한 경우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입찰에 참가한 것으로 봅니다.

③ 기명날인은 입찰서 제출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서에 전자서명한 것으로 합니다. 이 경우 전자서명은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함으로써 자동서명된 것으로 합니다.

제4조(호가입찰자 자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1. 타인의 입찰참가 방해, 낙찰자 결정 또는 매수인의 매수대금(사용료) 납부 방해 등 입찰진행을 방해한 사실이 있는 자
2. 입찰에 참가하여 부당하게 가격을 떨어뜨릴 목적으로 담합한 사실이 있는 자
3. 허위 명의로 매수 신청한 사실이 있는 자
4. 입찰을 방해할 목적 등으로 온비드를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게 하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자
5. 입찰을 실시하는 담당 공무원 및 직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있는 자
6. 그 밖에 이용기관회원이 별도로 정하는 자

제5조(관련 규정 및 호가입찰절차 준수)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입찰공고조건, 계약일반조건, 온비드 이용약관, 그 밖에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이를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제6조(호가입찰서 기재방법) ① 입찰은 입찰공고 물건의 입찰번호 단위로 입찰하여야 합니다. 다만, 별도의 고지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② 입찰자는 입찰서에 매수하려는 물건에 대한 입찰금액, 유찰 등 환불사유 발생 시 입찰보증금을 환불받을 환불계좌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의 표시는 아라비아숫자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③ 입찰보증금을 전자보증서로 납부할 경우 입찰금액은 입찰자가 전자보증서 발급신청시의 입찰예정금액 범위 내에서 직접 기재하여야 합니다.

④ 입찰서 기재의 오류로 인하여 회원이 입은 불이익 등은 회원 본인이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7조(호가입찰서 제출) ① 입찰서 제출은 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온비드로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되, 입찰서 제출시간은 공사가 지정한 공인인증기관이 전자서명법 제20조에 따라 확인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공인인증기관의 시점확인 시스템 또는 시스템에 연결된 네트워크 등의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온비드 서버에 접속된 시점을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② 입찰자는 입찰서를 입찰 마감시간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온비드

의 전산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입찰마감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③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후 입찰응답 메시지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의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④ 입찰자가 제출한 입찰서는 이를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으며, 동일한 입찰자가 하나의 물건에 대하여 2회 이상 입찰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제8조(호가입찰보증금) ① 입찰보증금은 이용기관회원이 정하는 입찰금액의 일정률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입찰참가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수수료 포함)을 입찰 마감시간 전까지 온비드에서 지정하는 보증금 납부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입금된 금액에서 입찰참가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합니다. 다만, 이용기관회원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② 입찰보증금 및 입찰참가수수료(입찰참가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에 한함)를 입찰 마감시간 전까지 보증금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은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입찰보증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입찰 마감시간 전까지 입찰보증금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③ 입찰보증금 및 입찰참가수수료 납부 시 은행공동망 등의 장애로 정상적인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보증금 납부여부는 입찰자가 온비드 화면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입찰자가 입은 불이익 등은 입찰자 본인이 책임을 부담합니다.

④ 입찰보증금을 전자보증서로 납부하려는 경우 입찰자는 온비드가 발급하는 관리번호를 이용하여 직접 발급기관에 보험청약을 하여야 합니다.

⑤ 입찰자는 발급기관으로부터 전자보증서 발급 통보를 받아 온비드에 전자보증서가 접수되었는지와 발급된 전자보증서 내용이 정확한 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⑥ 입찰보증금을 전자보증서로 납부할 경우 전자보증서 발급신청시의 입찰보증금은 전자보증서의 보험가입금액 및 입찰서 제출시 입찰자가 납부하는 입찰보증금이 됩니다. 다만, 입찰자가 낙찰받은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이용기관회원이 발급기관에 청구할 보험금은 전자보증서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하여 이용기관회원이 정하는 금액이 됩니다.

⑦ 입찰보증금을 전자보증서로 납부할 경우 입찰자가 선택한 전자보증서는 입찰서와 동시에 제출된 것으로 봅니다.

제9조(호가입찰방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입찰서를 제출하고 입찰보증금을 납부한 유효한 입찰자를 대상으로 호가입찰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입찰금액을

서로 올려 제출하는 방법으로 입찰을 진행합니다.

제10조(개찰) 개찰은 입찰 공고상에 명시된 입찰장소와 지정된 일시에 이용기관 회원이 직접 집행합니다. 다만, 온비드의 전산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개찰일시를 정할 수 있습니다.

제11조(낙찰자 결정)

① 낙찰자는 제9조의 유효한 입찰자 중 호가입찰마감 시간 전까지 최종 최고가격을 제출한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② 입찰자는 낙찰여부를 온비드의 입찰결과 화면 등을 통하여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제12조(호가입찰보증금의 처리 등) ① 낙찰자 결정 후 입찰자의 입찰참가수수료 및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이용기관회원이 등록 및 신청한 이체계좌로 이체되며, 유찰자(입찰무효 또는 입찰 취소된 경우 포함) 및 환불처리되는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입찰서 제출시 기재한 환불계좌로 이자 없이 환불되고, 환불시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합니다. 다만, 전자보증서를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한 경우 낙찰자 관련사항은 이용기관회원 입찰공고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보험료 환급 등과 관련된 사항은 발급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자 본인이 처리하기로 합니다.

② 제13조제1항에 따라 입찰이 연기되었을 경우 연기 이전에 정상적으로 납부된 입찰보증금은 개찰일시까지 보증금 납부계좌에 보관합니다.

제13조(온비드의 장애발생 등에 대한 처리) ① 온비드의 장애는 시스템 다운, 시스템에 연결된 네트워크의 장애, 업무처리의 기반이 되는 공인인증서 서비스 및 외부연계서비스의 장애 등으로 온비드 접속 또는 입찰서의 송·수신이 불가능하거나 은행의 입찰보증금 납부계좌 발번 및 은행대사 작업 등에 장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② 온비드의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진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연기 또는 취소의 공고는 시스템 복구 후 온비드 홈페이지(www.onbid.co.kr) 게재로 할 수 있습니다.

③ 온비드의 장애가 아닌 입찰자의 네트워크 또는 네트워크 서비스업체의 장애, 시스템 장애 등의 사유로 입찰서 등이 정상적으로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④ 제2항에 따라 입찰이 연기된 경우 연기 이전에 정상적으로 입찰서 제출 및 입찰보증금이 납부된 입찰은 유효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이용기관회원이 별도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⑤ 공사 및 이용기관회원은 온비드의 자체적인 장애 또는 시스템에 연결된 네트워크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온비드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의 입찰연기, 정정·취소 및 입찰무효처리 등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4조(계약체결 등) 낙찰자는 이용기관회원에서 정하는 소정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납부기한, 제세공과금부담 및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의 처리 등 계약체결과 관련한 제반사항 및 사후처리는 이용기관회원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15조(호가입찰서 제출시기 등에 대한 특약)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적용과 관련해서는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이 준수규칙을 우선 적용합니다.

제16조(준용법규) 이 준수규칙이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온비드 이용약관, 입찰공고문, 전자거래기본법령 및 전자서명법령 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